

관리감독자 교육 안내문

① 관리감독자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?(실시근거)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(관리감독자)
 -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 "관리감독자"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 -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② 대상 사업장은?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

③ 본 교육을 이수할 경우, 혜택은?

- 교육 이수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가능
- 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(8h)

④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일정표 (09:00~18:00, 1일과정, 8H)

| 구분 | 과 목 | 세부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|--|
| 1 | ○ 산업안전보건법 | -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구성 -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정책방향 |
| 2 | ○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| -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- 바람직한 관리감독자 상 정립 |
| 3 | ○ 기계안전 | - 위험 기계 기구 안전작업방법 - 위험 기계 기구 재해 사례 및 예방 |
| 4 | ○ 전기안전 | - 전기 안전 작업 방법 - 전기 재해 사례 및 예방 |
| 5 | ○ 위험성평가 | -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- 위험성평가 기법 실습 |
| 6 | ○ 산업보건 | -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 예방 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|

- ※ 상기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※ 작년 무재해 사업장이 아닌 경우 별도 8시간을 더 이수하셔야 합니다.

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이 아닌 경우 16시간 교육 이수 안내

- 선택 1 : 집체교육(50%, 8시간) + 집체교육(50%, 8시간)
- 선택 2 : 온라인 교육(50%, 8시간) + 집체교육(50%, 8시간)
- ※ 온라인 교육 문의 : 한국안전기술협회(TEL:031-480-8504)

⑥ 교육비 안내

- 교육비 : 회원사 : 63,000원, 비회원사 : 106,000원 (식사 미제공)
- ※ 본 교육 수료증은 수업시간 100% 참석 시 발급 가능
- 교육비 입금계좌 : 농협, 301-0130-2624-61, 예금주 : (사)한국안전기술협회
- ※ 6/07(금)까지 사업장명으로 입금, 교육당일 환불불가
- ※ 교육비 입금 문의 : 한국안전기술협회(TEL:031-480-8504)

교육 위탁계약서(신청서)

재직사원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_____(이하"갑"이라 한다)와 "한국안전기술협회"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| 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제1조 | 계약내용 및 교육 참가자 | 가. 계약내용 | | | | |
| | | 교육과정명 | 교육기간 | 교육시간 | 교육인원 | |
| | | 관리감독자 교육 | 2024. 6. 13(목) | 8시간 | 명 | |
| | | | | | 1인당교육비 | |
| | | | | | 회원사 : 63,000원() 비회원사 : 106,000원() | |
| 제1조 | 계약내용 및 교육 참가자 | 나. 교육 참가자 | | | | |
| | | 회사명 (법인명) | 대표자 | 소속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| | |
| | | 주소 | | | | |
| | | 업태 | 종목 | | | |
| | | 전화번호 | 팩스번호 | | | |
| 제1조 | 계약내용 및 교육 참가자 | 계산서 e-mail | 상시근로자수 | | | |
| | | 다. 교육생 인적사항 | | | | |
| | | 성명 | 생년월일 (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) | 부서 | 직위 | 핸드폰번호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제2조 | 신의 및 성실의무 | 가.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 | | | | |
| | | 나. "을"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고 수료기준에 부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. 수료기준은 출석률 100%이다.(법정 교육 이수 시간 준수) | | | | |
| | | 다. "을"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,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"을"의 귀책사유로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교육과정이 취소되는 경우 "을"이 책임을 진다. (단, 이는 "갑"이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 한하며, "갑"의 무단이탈 등에 따른 교육 미이수 시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.) | | | | |
| 제2조 | 신의 및 성실의무 | 라. 부득이한 이유로 교육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교육개시 3일전까지 연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 없이 교육 불참 및 출석 후 중도 이탈 시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 | | | | |
| | | 마. "갑"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및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, "을"은 제공받은 정보를 본 교육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| | | | |
| | | 바. 수집된 개인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(등록기관의 평가)에 따른 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 제3자 제공됨. | | | | |
| 제2조 | 신의 및 성실의무 | 제공 받는자 | 제공 항목 | 제공 목적 | 보유기간 | |
| |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 성명, 교육수료기관, 연령대, 소속회사정보(지역, 업종, 규모), 직위, 전화번호(휴대 및 사무실) |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에 활용 |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 즉시 폐기 | |
| 제3조 | 해석 및 합의 | 가.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. | | | | |
| | | 나.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, 기명 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| | | | |

2024년 월 일

| | |
|---|--|
| 갑) 회사명 : 주 소 : 대표자 : (직인) | 을) 회사명 :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주 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, 타원타크래프 9층 대표자 : 우 종 현 (직인) |
|---|--|